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44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이인영・이학영・전용기

박상혁 • 이정문 • 김용만

이기헌 · 장철민 · 임광현

김동아 · 김성회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탁기업이 사용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수탁기업이 온전히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72.6%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3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약정서

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건비 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			
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			
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			
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		
	<u>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 상</u>		
	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		
	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